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71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문대림 · 김승원 · 민홍철
최민희 · 권향엽 · 박지원
노종면 · 김성범 · 박 정
박해철 · 문금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은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 및 미래세대 부담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청년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의 고용·교육·주거·복지·문화·금융·자산형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청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청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영향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영향평가 결과와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으며,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반영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청년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평가결과의 관리 및 활용, 국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청년영향평가 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생 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7.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u><신 설></u></p>	<p>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영향 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제12조의2(청년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의 고용·교육·주거·복지·문화·금융·자산형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청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u></p> <p><u>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청년 및 관</u></p>

런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영향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영향평가 결과와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으며,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4. (생략)
<신설>
 5. ~ 7. (생략)
 ③ ~ ⑨ (생략)

⑥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반영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청년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평가결과의 관리 및 활용, 국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청년영향평가 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